

나. 연구경력

경력구분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1)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원 경력(10할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(전문대학 포함) 또는 대학원 ◦ 대학(전문대학 포함) 또는 대학원의 부속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◦ 대학의 부속시설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, 그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서 유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<p>※ 연구지원, 연구보조업무 및 외부용역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에서 임시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</p>
2)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(10할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- 기타 법률에 의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
3) 대학(대학원)의 연구 전담 조교 경력(10할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(대학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
4)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(10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원(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 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석사)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 연한을 인정한다. - (박사)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. <p>※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. (1학기 : 3. 1. ~ 8. 31. / 2학기 : 9. 1. ~ 2. 28)</p> <p>※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 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.</p>